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254호(號) 1927(昭和 2)년 11월 2일 수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351호(號)

1927(昭和 2)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28호(號) 조선국유철도 화물운임규칙(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) 별표(別表) 화물특정임률표(貨物特定賃率表) 중(中) 1927(昭和 2)년 11월 5일부터 아래[左]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27(昭和 2)년 11월 2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자작(子爵) 사이토 마코토(齋藤實)

국선(局線) 내(內) 특정임률(特定賃率)의 부문[部] 중(中) 누에고치용[繭用] 빈 바구니[空籠]의 항(項)을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죽롱(竹籠), 기류롱(杞柳籠), 추롱(蓀籠)(견용기[繭容器]에 한[限]함)	국선(國仙) 및 연대선(連帶線)	상호간(相互間)	소화물급(小貨物扱)	4급임률(四級賃率)의 35마일(哩·mile)까지 3할(割) 감(減) 36마일(哩·mile) 이상 4할(割) 감(減)
---	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	------------	--